

2026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

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

2026. 3. 5.(목)


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1. 최근 민생금융 동향 및 리스크 요인
2. 민생금융부문 업무 추진 방향
3. 민생금융부문 업무 계획
 - (1)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 - (2)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 - (3)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
 - (4)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
 - (5)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
 - (6)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강화

1. 최근 민생금융 동향 및 리스크 요인

①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·조직화

- ✓ 불법사금융 방식의 진화(음성화, 비대면화)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
- ✓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경우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사기 수법이 고도화
- ✓ 병·의원, 설계사 등이 가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진화, SNS 등을 활용한 신종수법도 확대

② 취약계층 자금 축소 및 부담 가중

- ✓ 최고금리 규제,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자금 공급이 위축되고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로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

③ AML 리스크 확대

- ✓ 동남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, 로맨스스캠 등 초국경 범죄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

2. 민생금융 업무 추진 방향

민생범죄 대응 총괄단 구성

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·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**종합적·체계적으로**
대응하기 위해 '**민생범죄 대응 총괄단**'*(단장 : 민생금융부원장보)'을 구성

* 민생침해대응총괄국, 금융사기대응단, 보험사기대응단, 서민금융보호국, 자금세탁방지실, 금융교육국



'26년 민생금융 부문 업무 추진 방향

① 사전 피해예방 - ② 단속·점검 - ③ 피해구제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

① 사전 피해예방

- 제도 및 시스템 개선
- 역량 강화(유관기관 협력 등)
- 교육, 안내, 홍보 강화

② 단속·점검

- 제도 및 시스템 개선
- 단속 및 점검 강화

③ 피해구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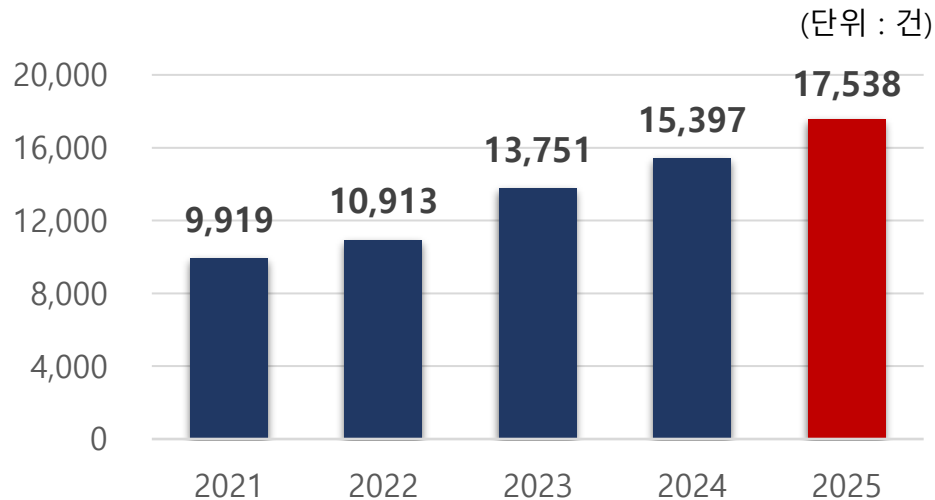
- 제도 및 시스템 개선
- 채널 확충

3-(1).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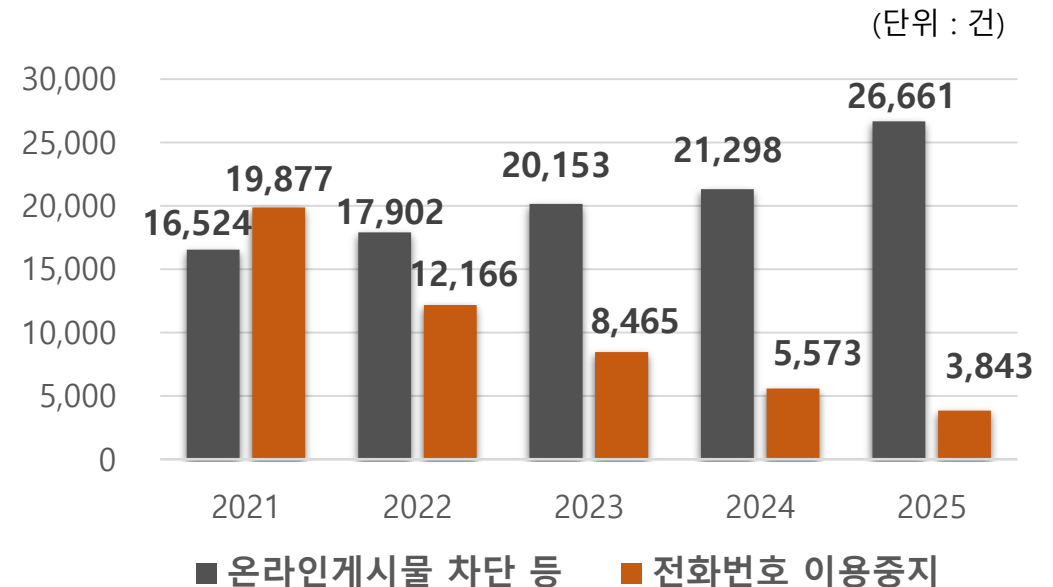
현황

- 장기화된 고금리, 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 자금애로가 심화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, 특히, 지인 추심, 성착취 추심 등 악질적 수법으로 민생을 침해
- 인터넷 카페, 유튜브, SNS, 스팸문자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,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금융 투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업 등 금융범죄가 확산될 가능성

불법사금융 피해 신고·제보 접수현황



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



3-(1).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
① 불법사금융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조치

- ☑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워지는 불법금융광고 유형을 모니터링
- ☑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 도입
 - * 대포폰에 2~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불가로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
- ☑ 피해예방·대응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
 - *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(SNS, 홈페이지) 및 오프라인(지자체, 영업점 창구) 채널로 홍보
- ☑ 불법금융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

②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는 강력한 단속 조치 및 정책 지원

- ☑ 민생 금융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추진
- ☑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거래를 정지
 - * (금감원)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사금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 → (금융회사)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
→ 고객확인 불가시 거래정지

3-(1).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
③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돕는 실효적인 피해구제 조치

- 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(온라인 채널 개설 등)하고,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하여 요청

* '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협약(국조실·금융위·금감원·경찰청·신복위 등)에 따라 추진

- ☑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여 초동대응을 강화
- ☑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,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

금융회사 당부사항

- ✓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업권의 관심 및 홍보, 적극적인 대응 필요
- ✓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업자 관련 고객 안내 강화, 신고 등 피해 확산 방지 당부

3-(2)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
현 황

➤ '25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*

* 총 피해금액 : '24년 8,545억원 → '25년 **1조 2,578억원**(+47.2%)

사기이용계좌 수 : '24년 71,869건 → '25년 **130,916건**(+82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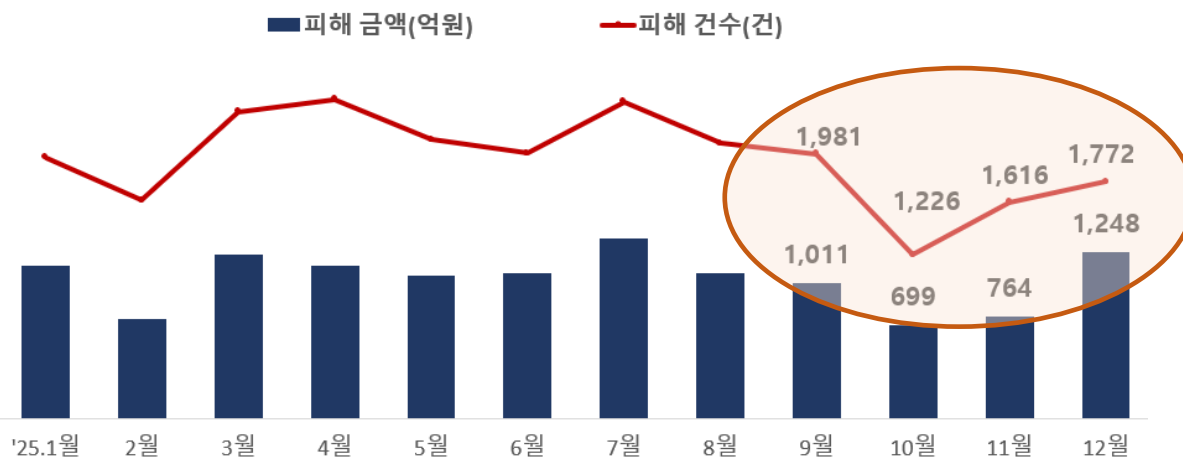
- 다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*으로 '25.9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**

*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(8월), 캄보디아 범죄조직 단속(10월) 등

** 월별 피해건수 : ('25.9월) 1,981건 → (10월) 1,226건 → (11월) 1,616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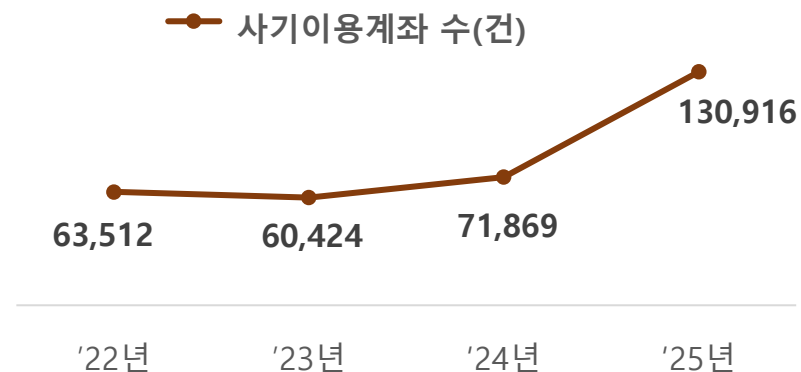
월별 피해금액 : ('25.9월) 1,011억원 → (10월) 699억원 → (11월) 764억원

월별 피해금액 및 건수



※ 자료 : 경찰청

연도별 사기이용계좌 수



※ 자료 :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신청 기준

3-(2)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
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('25.8월) 이행과제 추진

- ☑ 금융,통신,수사부문의 범죄 의심정보를 플랫폼(ASAP*)으로 공유 ⇒ 개정 환급법('26.8.4.) 시행

* ASAP : AI-based anti-phishing Sharing & Analysis Platform

- 금융, 통신,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플랫폼에 집중하여 AI로 분석·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FDS활용하여 선제적 지급정지 등 조치

- ☑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 및 환급 적용 ⇒ 환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('26.2.11.)

-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책임을 부과하고
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, 환급 실시

- ☑ 금융사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피해예방 역량 강화 ⇒ 환급법 개정안 발의('25.12월)

- 무과실책임 법제화 : 범죄 피해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피해자에 보상
- 피해예방 역량 강화 : 금융사가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

3-(2)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
② 신종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 ('26.1월 대통령 지시사항)

- ☑ 온라인 신종스캠 범죄*에 대한 이상거래탐지(FDS) 등 실시

* 투자리딩방 사기, 대리구매(노쇼)사기, 팀미션 부업 사기, 연애 빙자 사기 등

-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신종스캠 유형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FDS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('26.3월~)

③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 실시

- ☑ 공항, 버스터미널, KTX열차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홍보 실시
- ☑ 홍보 파급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
- ☑ 홍보대사(가수 나태주)를 활용하여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

금융회사 당부사항

- ✓ 소비자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FDS 고도화 등 자체 대응 능력 강화
- ✓ 고령층 등 취약 고객층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

3-(3).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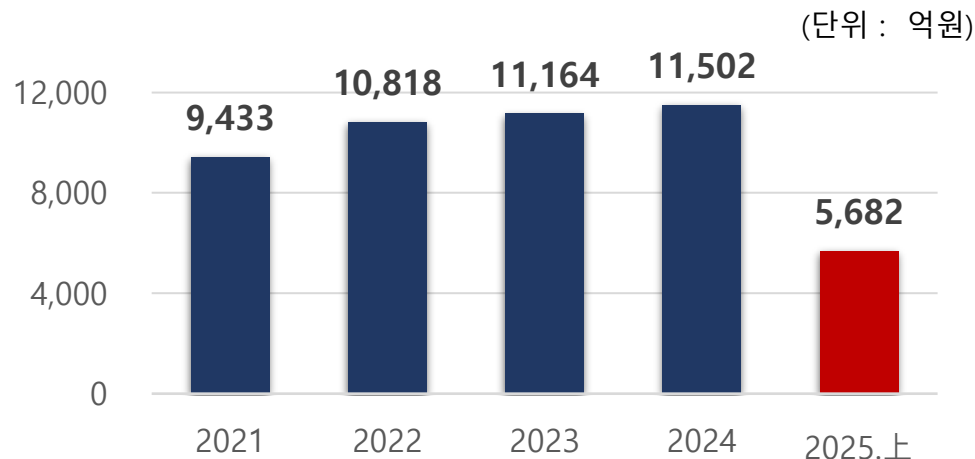
현황

-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2천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※ 연간 민영보험사기 금액은 8.2조원으로 추정
- 최근 의사 등 의료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를 기망하고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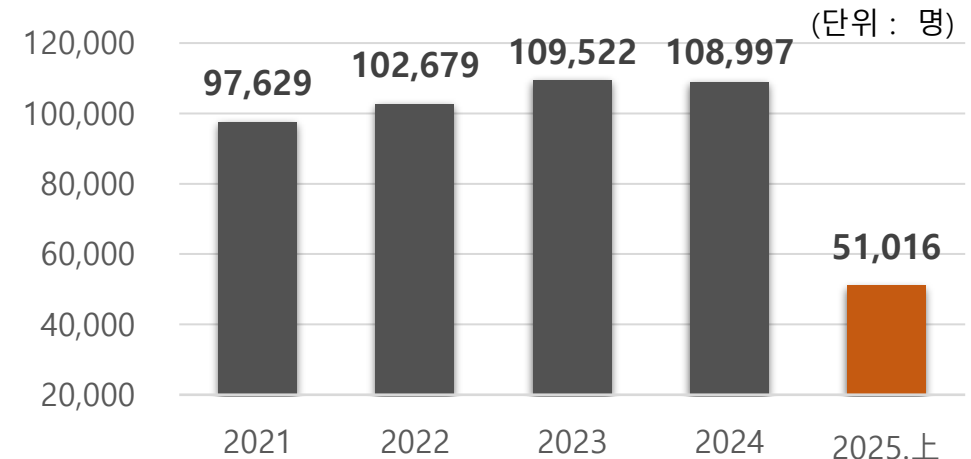
* (예시) 의료인이 비만치료제(마운자로 등)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, 동 구입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여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·수령토록 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

➡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사기에 대한 양질의 제보를 확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'특별 신고·포상 기간'을 운영 중

보험사기 적발금액



보험사기 적발인원



3-(3).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

① 국민보험(실손, 자동차)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·상시 조사 강화

- ☑️ 피부미용 시술의 치료행위 둔갑, 허위입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손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상시 조사를 확대
- ☑️ 병·의원 주도 보험사기 및 SNS상 허위환자 유인 등 보험사기 권유·알선·유인·광고 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강화
- ☑️ 자동차 보험사기 행태 분석 및 SNA 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가피 공모, 한방병원, 정비공장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시에 인지 후 신속한 기획조사 추진

② 보험사기 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

- ☑️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태에 대한 채증 강화를 위해 '보험사기방지 특별법' 상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의 범위를 확대
- ☑️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정보교류 증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규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

3-(3).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

③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

- ☑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 (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재단에 출연)
- ☑ 보험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 및 환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 ('09년 이후 총 2.2만명, 99억원 보험료 환급)

④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엄중 처벌 및 통제방안 마련

- ☑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해 모집인 등록 전반(진입-퇴출-재진입)에 걸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모색
- ☑ 보험사기 확정판결 이전 단계라도 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보험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

금융회사 당부사항

- ✓ 실손 및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·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고,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

3-(4).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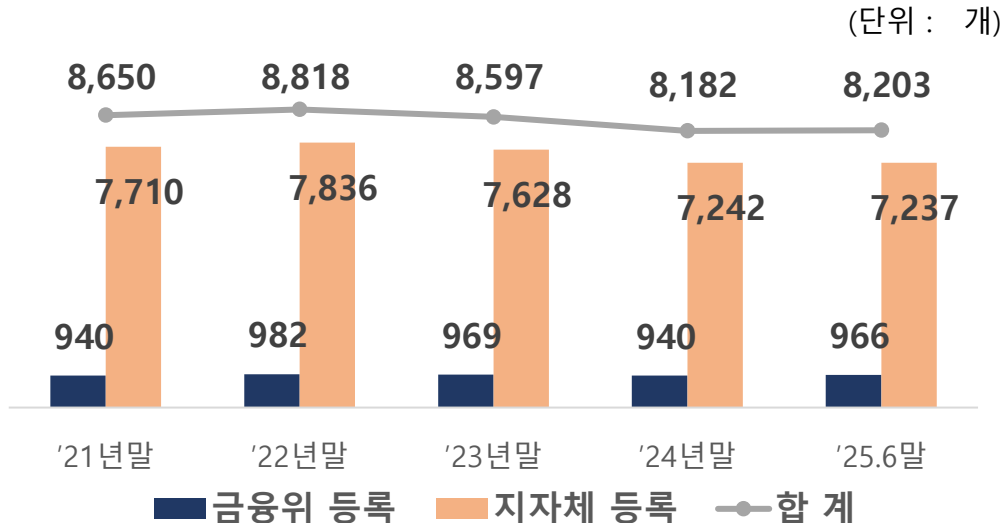
현황

- '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크게 감소했던 대부업 대출잔액 및 이용자수가 '25년 들어 소폭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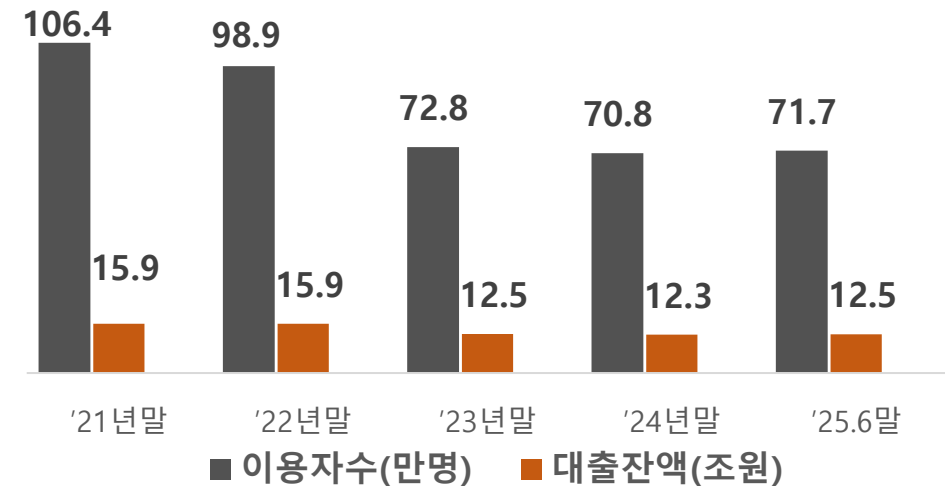
* 조달금리 (대형 대부업자) : 6.0%('22년말) → 7.4%('23년말) → 7.2%('24년말) → 6.8%('25.6말)

- 금융권은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시행에 따라, 상각채권 이자부담 완화, 추심 총량제(7일7회) 등 신설 규제 관련 내부통제를 마련하였으나 자율 채무조정 등 일부 제도 활성화 부족

등록 대부업체 현황



대출 이용자수 및 잔액 현황



3-(4).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

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감독 강화

- ☑ 장기 연체 채무자 등에 보호장치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
 - * 대부업권 「소멸시효관리 모범규준」 추진,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행위 중점 점검 등
- ☑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 지도 및 매입채권 추심행위 적정성 점검
 - * 상각채권 장래이자 면제, 추심제한 채권의 추심연락 차단, 추심총량제 등 준수여부 점검
- ☑ 채권추심업자 점검시 렌탈채권 추심업무 적정성 점검

② 불법추심 근절 등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

- ☑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여부, 불법사금융 연계 등 중점 점검
 - * 대출 문의자 정보 보안대책,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정보 이전 여부 등 점검
- ☑ 채권추심회사의 불법 추심 사례 및 대응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
 - * 회생절차 중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반복 금지 등

3-(4).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

③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 강화

☑️ **대부업·채권추심업권 CEO 간담회 개최**

*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, 건전한 영업관행 정책 등을 당부하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

☑️ **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위한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**

* 개인채무자보호법 최근 이슈, 주요 검사 지적 사례,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 교육

☑️ **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**

* 개인채무자보호법 최근 이슈, 주요 검사 지적 사례,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 교육

금융회사 당부사항

✓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및 「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」 등

채무자 보호 관련 규제 준수 철저 당부

✓ 대부업계에는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

신용공급 활성화를 당부

3-(5).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

현황

-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가 국경을 넘어 국제화되는 가운데, AML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업권이나 해외점포 등 취약고리가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 증대
 - ➡ 민생범죄 리스크에 기반한 취약업권 등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(AML) 역량 강화 필요
-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와 함께 명의도용인의 부정대출·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 ➡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

1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·정비

- ☑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신속·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불법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거래 모니터링 등 AML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*
 - * '24년부터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(FIU 주관) 운영 중이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신규테마 발굴 예정
- ☑ 범죄자금 동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FIU와 협업하여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
- ☑ 안전한 비대면거래 정착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대면에 준하는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 구축 및 기존 방식의 취약점 보완 등 추진

3-(5).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

② 자금세탁방지(AML) 업무 관련 중점 검사사항

- ☑ AML 법규위반 뿐만 아니라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·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AML 역량 제고 유도
- ☑ 은행권의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방안('25.11월) 이행현황을 중점 검사하고, 제2금융권의 해외점포 AML 부문 체크리스트 마련을 지도하여 초국경범죄 대응체계를 강화
- ☑ 위험기반접근법(RBA)에 따라 고위험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하는 한편, 소규모·취약업권의 경우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로 자율적인 AML 역량 강화 유도

금융회사 당부사항

- ✓ 금융회사 내 AML-소비자보호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 보고 등 AML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
- ✓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강화 등 비대면 금융사고 사전예방 노력 및 적극적인 책임분담 필요

3-(6).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강화

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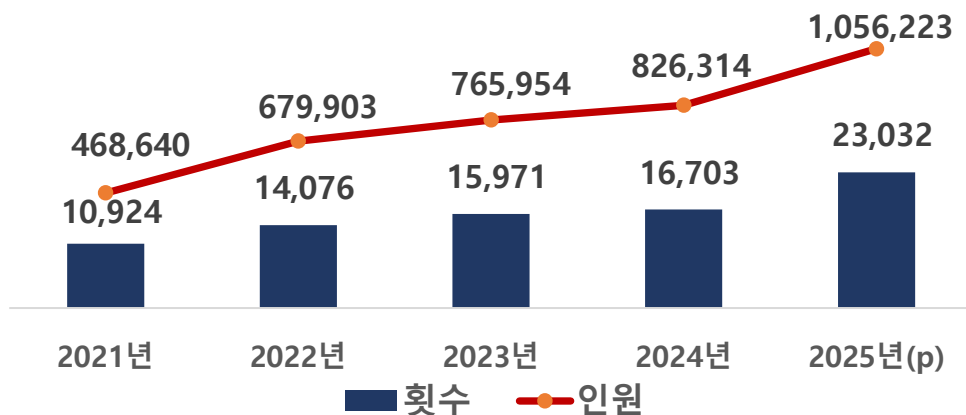
- 교육수요 기관과 협력 강화*,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금융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온·오프라인 교육실적이 예년 대비 개선

* (예) 금융교육 관련 MOU 체결(하나원(25.1), 충북도청/교육청(25.4) 등),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주간 운영(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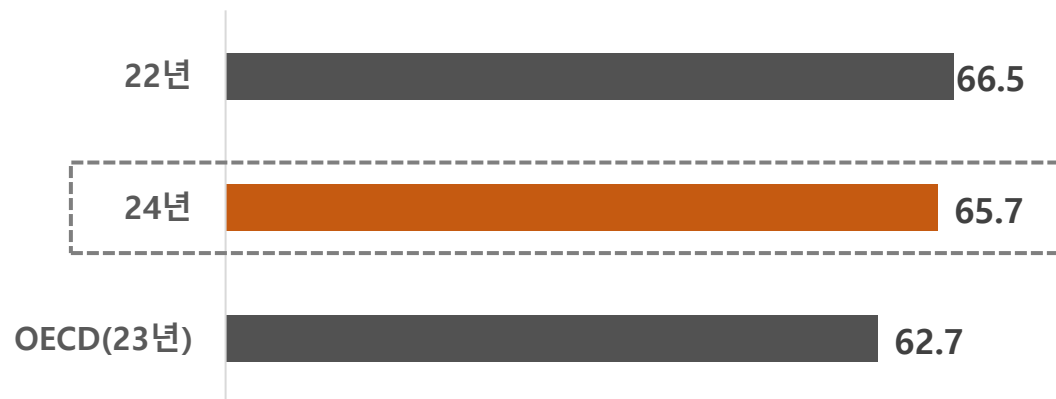
- 다만, '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(65.7점)는 OECD 평균('23년, 62.7점) 대비 높았으나, '22년(66.5점)과 대비 소폭($\Delta 0.8$ 점) 하락

➡ '26년도 금융교육은 '생애주기별 체계적 교육을 통한 금융역량 제고'에 초점을 둘 예정

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실적



'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(성인)



3-(6).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강화

생애주기를 고려한 금융교육 실시

- ☑ ①아동·청소년층, ②청년층, ③중·장년층, ④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 수요 및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
- ☑ 연령대별 핵심 금융교육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 시행 및 콘텐츠 확충·개편, 금융교육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도모
- ☑ 군장병, 자립준비청년, 고령층 등 금융취약·소외계층의 경우 특화된 교육·상담·특강 등을 별도 실시하여 금융피해 예방 및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

연령	아동·청소년층	청년층	중·장년층	고령층
교육 방안	· '금융과경제생활' 정착 지원 · 'FSS 투자탐험대' 등 운영	· 맞춤형 재무상담 진행 · 신종 사기유형 및 대처법 안내	· 자산관리 및 노후준비를 위한 온라인 과정 개설 등 교육 강화	·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 실시 · 고령층 집중 교육기간 운영
기대 효과	· 건전한 금융습관 조기형성 · 디지털 금융리터러시 향상	· 신용관리 및 경제적 자립 지원 · 취업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	· 노후 대비 충분한 자산 형성 · 자산·부채 관리능력 제고	· 금융사기·사고 대응역량 강화 · 디지털금융 소외현상 방지

금융회사 당부사항

- ✓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은 각 연령대별 금융상황(급여관리, 주택마련, 노후대비 등)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 국민 대상 필수과정이므로 **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참여**를 요청드립니다

감 사 합 니 다

